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2002. 7. 19. 제정

2020. 12. 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특수교육 분야의 이론과 현실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 수행
 2. 특수교육 관련 학술 행사
 3. (삭제 2008.8.19)
 4. 국내외의 특수교육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5. 특수교육 분야의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6. 특수교육 연구 및 교육 전문 인력 지원
 7.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 가족과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8. 특수교육 관련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 발행
 9.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개정 2008.8.19)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학술연구부, 홍보관리부, 현장지원부, 국제협력부, 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학술연구부는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 및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관리부는 연구소 관련 정보 수집, 문서관리, 홍보,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현장지원부는 교사교육, 교사지원, 교육자료 보급 등 특수교육 현장 발전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국제협력부는 연구소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출판부는 연구소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삭제 2008.8.19)

⑧ 행정실은 연구소의 서무회계와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8.8.19)

제6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9.26.)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9.2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사범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8.19)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소장, 부소장, 특수교육과장, 언어병리학과장 및 소속 대학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4.9.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08.8.19)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기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9.26., 2018.6.20.)

부 칙(2002. 7. 19 제정)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9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